

#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

## ✓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인상

- 2024년 **교육급여 교육활동비**를 전년 대비 평균 **11.1% 인상**하였습니다.
- **초등학생**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415,000원에서 **461,000원으로 인상**됩니다.
- **중학생**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589,000원에서 **654,000원으로 인상**됩니다.
- **고등학생**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654,000원에서 **727,000원으로 인상**됩니다.



## ✓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PC) 신청 가능

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**복지로(www.bokjiro.go.kr)**에서 **온라인(PC)으로 언제,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** 할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, **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** 가능합니다.

## ✓ '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받은 경우 '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

- '23학년도에 신용·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고, '24학년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**별도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신청정보(기존 신청인 및 카드사)로 바우처가 자동신청**됩니다.
- 단, 기존 신청정보(신청인, 카드정보) 변경을 원하는 경우 기간 내에 '자동신청 거절' 등록 후 본 신청기간에 '신규신청'이 필요합니다.
- '23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 지급받은 경우에도 본 신청기간에 '신규신청' 필요
  - ※ 자동신청 지원 기간 : 2024. 3월 ~ 8월
  - 자동신청 거절 등록 기간 : 2024. 3. 5. (화) ~ 2024. 3. 21. (목)
  - 바우처 본 신청기간 : 2024.4.1.(월) ~ 2025.6.30.(월)

## ✓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-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'바우처'로 지급되므로,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**온라인(e-voucher.kosaf.go.kr)으로 '바우처'를 신청**하셔야 합니다.
-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**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홈페이지)**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문의처**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| 1544-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| 1599-2000 한국장학재단(바우처 신청) 콜센터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| 학교 및 교육청

## ?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?

교육급여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종류로써, **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**인 경우 대상으로 선정됩니다. 또한 생계·의료·주거급여와 달리 **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**

## ?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.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,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최초로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셔야 합니다.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,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## ?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## ?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**온라인(PC 또는 모바일)으로 언제, 어디서나 신청** 가능합니다.



## ?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.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
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 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**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** 부탁드립니다.

## ? 작년에도 교육비 지원을 받았습니. 또 신청해야 하나요?

이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'24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,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**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** 바랍니다. (oneclick.neis.go.kr)  
☞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없음

## ? 왜 교육비 지원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?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,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별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.

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**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**이므로,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 ?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고,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.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큰아이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, **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** 합니다.

## ?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누가 신청하나요?

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. 다만,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, 교육비 지원은 **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☞ 만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, 본인 신청 가능

## ?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비치되어있는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**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**,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**대출금 증빙서류**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☞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 수급자)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온라인 신청시에는 **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**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.

## ?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?

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,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, 형제,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


## ?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?

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**30일 이내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)**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(희망시 문자메시지 추가 가능)으로 통지 되고, 교육비 지원은 **4월 말~ 5월 초** 심사결과를 서면·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드립니다.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# 2024년도

## 초·중·고 학생 교육급여 · 교육비 지원

# 신청하세요!!



집중 신청기간

# 2024. 3. 4. (월) ~ 3. 22. (금)

※ 연중 신청 가능하나,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

- 지원 대상**  
교육급여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  
교육비 지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
- 지원 내용**  
교육급여: (초·중·고)교육활동지원비, (고)교과서 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  
교육비 지원: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 학비(입학금 및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등
- 신청 방법**  
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PC) 신청  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•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 
※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(e-voucher.kosaf.go.kr)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
- 제출 서류**  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 등  
※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##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무엇이 다른가요?

### 지원기준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,  
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·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 
(통상 기준 중위소득 50%~80% 이하)

💡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.  
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%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,  
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### '기준 중위소득'이란?

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


### '소득인정액'이란?

가구원(학생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

$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^{(1)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(2)}$$

(1)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 
(2) (각종재산\* - 기본공제액 - 부채) × 월 소득환산율  
\* 재산 : 토지, 주택, 전월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

## 지원대상

### 교육급여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
(단위: 원)

구분 \ 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	1,114,223	1,841,305	2,357,329	2,864,957	3,347,868	3,809,185	4,257,497

### 교육비 지원

- 1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2 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3 법정 차상위 대상자

💡 법정 차상위 종류

구분	내용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
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 대상자	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장애(아동) 수당을 받는 자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	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

-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「시도별 지원 기준」에 해당하는 경우
- 5 학교장 추천 :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

##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

### 선정절차



### 지원내용

💡 교육급여

구분	교육활동지원비	교과서 대금	입학금 및 수업료
초등학생	461,000원	-	-
중학생	654,000원	-	-
고등학생	727,000원	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	입학금·수업료
지원 횟수	연 1회 (바우처로 지급*)	연 1회 (학교로 지급)	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\*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(카드포인트 등)로 지급되며, 교과서대금, 입학금·수업료는 납부면제(학교로 지급,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)

💡 교육비 지원

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
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비 포함)
초등학생	-	학기 중 중식비 전액 (무상급식 학교 제외)	연 60만원 내외 지원	가구별 컴퓨터 1대	가구별 1회선
중학생	-				
고등학생	입학금·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* (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)				
지원 방식	학교 납부액 감면			직접 설치	요금 면제

\* 교육급여로 입학금/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

##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절차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 
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접속

💡 준비사항 : 공동인증서, 가구원의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

